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관리번호 :

위탁자 (이하 “거래처” 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한다)은 유언대용신탁 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의의와 목적) ① 본 계약은 거래처가 그의 생전 또는 사후에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지정하고 금전,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면 은행이 이를 운용 및 관리하는 신탁계약이다.

② 본 계약의 목적은 거래처의 재산을 은행이 수탁받아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운용·관리 하고, 거래처의 사망 후에도 당초에 의도한대로 신탁재산을 운용·관리하여 연속수익자에게 교부 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처(위탁자)” 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 라 함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 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거래처를 수익자로 본다
4. “연속수익자” 라 함은 거래처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사망통지인” 이라 함은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사실을 은행에 지체없이 통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신탁재산) ① 거래처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탁가액은 각 재산의 종류별 신탁계약(이하 “부수계약” 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

- ② 거래처는 본 계약의 재산목록을 [별지] 신탁재산 목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별 운용 및 관리는 제4조의 부수계약에 따른 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부수계약) 거래처와 은행은 신탁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본 계약에 부수하여 추가로 재산의 종류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6조 (신탁 기간) ① 본 계약의 신탁 기간은 다음 [표 1]의 각 호를 기재하여 정한다.

[표 1]

호	신탁 기간	비 고
1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지정
2	기간에 대한 특약 :	조건 지정

- ② 본 계약의 신탁기간은 거래처와 은행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탁계약 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각 부수계약의 개별 계약 기간(기간 연장 포함)은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수익자, 연속수익자의 지정 및 신탁재산의 배분 등) ① 거래처는 본 계약의 연속수익자를 다음 [표2]와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익자를 복수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차수의 연속수익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표 2]

순 서		정보내용		거래처와의 관계
제1	연속 수익자	성 명		거래처의()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여권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자택주소		

		연락처		
	연속 수익자	성 명		거래처의()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여권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자택주소		
		연락처		
제2	연속 수익자	성 명		거래처의()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여권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자택주소		
		연락처		
	연속 수익자	성 명		거래처의()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여권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자택주소		
		연락처		
제3	연속 수익자	성 명		거래처의()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여권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의()
		자택주소		
		연락처		
	연속 수익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여권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자택주소		
	연락처			

② 제 1항 단서에 의한 복수의 연속수익자의 경우 수익권은 연속수익자에게 균등 지급한다. 단, 연속수익자중 1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신탁계약은 종료되며 신탁원본 및 이익은 생존한 연속수익자와 사망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제1연속수익자가 위탁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제2연속수익자가 제1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하고 제3연속수익자는 제2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④ 제 1항에서 정한 제2연속수익자가 제1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제3연속수익자가 제2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⑤ 제 1항에서 정한 최후순위 연속수익자가 선순위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거래처는 새로운 최후순위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해당 최후순위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최후 순서로 지정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탁원본 및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거래처는 제 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속수익자(지정/정보)변경의뢰서’ 양식을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거래처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며 거래처의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연속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⑨ 거래처가 수익자가 아닌 경우 연속수익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제8조 (사망통지인의 지정 등) ① 거래처는 아래 [표 3]에 기재된 사람을 그의

동의를 받아 사망통지인으로 지정한다.

[표 3]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년월일
여권번호 등		
자택주소		
연락처		
거래처와의 관계		

② 거래처는 아래 각호의 경우 은행의 승낙을 얻어 제1항의 사망통지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
2. 거래처가 사망통지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망통지인은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때 지체없이 그 취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한다.

④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처의 상속인 또는 연속수익자의 상속인은 사망통지인을 대신하여 사망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거래처가 사망통지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
3. 사망통지 이전에 은행이 거래처의 사망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4. 거래처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까지 사망통지를 지연하는 등 사망통지인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제9조 (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내역 통보) ① 은행은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제4조의 부수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한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거래처(거래처가 사망한 경우 연속수익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유지한다)에게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계약서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운용내역 통보여부	<input type="checkbox"/> 통보를 원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통보를 원함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E-mail)	거래처 (인)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은 그 내용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은행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리인의 지정) ① 거래처는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별 부수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권이 있는 경우 이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위임된 권한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대리인 위임장 등 기타 적법하게 위임권을 수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의 지정없이 거래처가 사망한 경우 연속수익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거래처 또는 거래처 사망 후 연속수익자는 은행의 승낙을 얻어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본 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2조 (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은 전부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3조 (선관주의 의무) 은행은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신탁보수 및 수수료) ① 본 계약의 보수는 아래의 [표4]에 근거하여 고객이 부담하며, 신탁 재산별 개별보수는 각 부수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② 보수 및 수수료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요구하여 받거나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여 수령하도록 한다.

[표4]

항 목	보수율	비 고
기본 보수	최초 수탁액 X ()%	1회 선취
기간별 보수	5년미만 : 없음	
	5년이상 10년미만 : ()%	
	10년이상 : ()%	

제15조 (세금 및 비용 부담) ① 신탁 계약과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 및 기타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각종 소송비용 포함)은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거나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이익계산 및 지급) 은행은 신탁이익계산 및 지급에 대해 제4조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한다.

제17조 (중도해지) 거래처는 본 계약에서 정한 신탁 재산별 신탁계약기간 만료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해지한 재산을 거래처에게 지급하고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 신탁계약일로부터 () 미만 지났을 때 : 해지 신탁재산 가액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 미만 지났을 때 : 해지 신탁재산 가액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지났을 때 : 해지 신탁재산 가액의 ()%

제18조 (수익권의 양도와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불가하며, 은행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신탁 종료 및 신탁재산의 교부 등) ① 본 신탁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거래처의 사망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에서 정한 중도해지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1. 제6조에서 정한 신탁 기간이 종료된 때
2.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3. 수익자와 연속수익자 전원이 사망한 때
4. 유류분의 반환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받고 그 유류분의 반환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된 경우
5.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제3자로부터 수익자의 권리에 제한사항이 발생한 경우
6.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 중재, 명령 등으로 인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 때
7.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8. 기타의 사유로 신탁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에 따른 신탁재산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당한 권리자(이하 “권리자”라 함)에게 지급한다. 이 때 은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제출한 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되었으나, 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은 권리자 확정 이전까지 신탁재산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경우 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취득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에도 권리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신탁재산을 법원에 공탁(보관을 위탁)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은행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권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교부한다.

- ⑥ 은행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계산승인을 요구하고, 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은행은 제6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할 경우 “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자가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⑧ 권리자는 은행으로부터 제6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6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은행에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거래처, 연속수익자, 대리인, 사망통지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3. 기타 본 신탁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은행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

제21조 (인감신고) ① 거래처, 연속수익자 및 대리인 등 신탁관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본 신탁과 관련된 모든 서류 등에 도장이 찍힌 모양을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은행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은행은 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계약 등의 변경 등) ① 은행은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변경예정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은행은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거래처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불리한 것일 경우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은행은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양식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등)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본 계약 및 부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래처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인 경우
2. 거래처의 신탁목적이 제3자와의 채무관계 면탈 또는 소송 목적으로 밝혀진 경우
3.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제24조 (계약의 우선 순위) ① 본 계약과 부수 계약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 본 계약의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부수 계약에 따라 적용된다.

③ 분쟁 및 기타 사유 또는 법적인 조치로 본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따른 부수계약도 무효가 되며 신탁재산은 운용현상대로 제1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제25조 (수탁자의 면책) ① 허위 사실 기재 등 기타 거래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은행은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는 주소와 연락처 등 은행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은행은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가 **허위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또는 기타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은행은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 내용 및 부수 계약의 신탁재산과 관련된 **분쟁 또는 법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신탁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에게 통지하며,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유지를 위해 분쟁 또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은행에 통지한다.

⑤ 제4항의 분쟁 또는 법률적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신탁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신탁 계약의 불이행 및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 은행은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은행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법원에 공탁(보관을 위탁)한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사망통지인이 제8조 제3항의 통지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은행은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특약)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 (준용)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28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거래처와 은행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신탁재산 공시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년 월 일

위탁자겸 수익자	자택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여권번호 등	
	성명	(인감도장)
제1연속	자택주소	

수익자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여권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감도장)
제2연속 수익자	자택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여권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감도장)
제3연속 수익자	자택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여권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감도장)
수탁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신한은행	지점장 (인/서명)

별 지 : 신탁재산 목록표

[별지]

신탁재산 목록표

(년 월 일)

위탁자 :

(인/서명)

작성자 :

(인/서명)

1. 금전

금 _____ 원정

2. 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	재산가액	비고

3. 증권

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종목명	수량	비고

4. 기타

--